

1.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 고시 제2022-28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안)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36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한다.

제1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가압수 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3조(「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조(「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한다.

제7조(「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

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으로 한다.

제8조(「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0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3조(「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6조(「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7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8조(「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9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가스용기"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20조(「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1조(「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2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

조제1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5조(「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예비전

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한다.

제26조(「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7조(「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8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9조(「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0조(「측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측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측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측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1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3조(「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4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	제1조(목적) -----	「소방시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40조제4항 -----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		
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 규칙」 제16조제1항-----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술기준-----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		

제35조(「플래텀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플래텀
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플래텀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플래
텀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6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피
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 일부개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구성부품) ① (생 략) ② 가압수조장치에 사용되는 개폐표시형밸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 인증제품 또는 기타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	제9조(구성부품)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폐표시형밸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1. “소방용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

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

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 일부개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 ④ (생략)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 10. (생략)	제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 10. (현행과 같음)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

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

부개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

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

부개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

정고시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 <u>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u> 」 (「 <u>고압가스 안전관리법</u>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 <u>가스용기</u> ”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u>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 <u>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u>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u> ”란 가압식소화기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1. “ <u>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u> ”(「 <u>고압가스 안전관리법</u>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 <u>가스용기</u> ”라 한다)란 가압식소화기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 <u>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u>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 <u>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화전합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합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위임한 「소화전합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위임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	제1조(목적)	-----	「소방시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		제40조제4항-----		
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		-----		
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		-----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		
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		-----		
로 한다.		-----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	제1조(목적)	-----	「소방시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		제40조제4항 -----		
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한다.		---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자동차압급기땀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땀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자동차압급기땀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임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

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측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측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용되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용되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